

18.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4월 1일
- 제출자 : 전경원 의원, 김규학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윤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4월 5일
- 상정일자 :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년 4월 14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전경원 의원)

제안이유

-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및 신청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된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교육공무직원 포함)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각 조문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 ▶ 본 제정 조례안은 7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수행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직무관련사건 대상과 관련하여 공무원 외 시설관리직·조리원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구성원들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음

▶ **안 제3조에서**, 직무관련사건 지원과 관련한 소송심의회 및 지원 경비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직무관련 소송 지원에 있어 소송심의회를 거쳐 지원하도록한 것은 지원과 관련한 사전 심사 및 판결 후 소송비용 회수 포기,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아울러,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500만원(기소 전 수사 단계 포함 시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사항은 직무관련 소송 비용 규정이 있는 타 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비교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타 자치단체 직무관련 사건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자치단체	지원 근거	지원금(심급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운영에 관한 조례	500만원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소요비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1천만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요비용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1천만원

※ 그 외 교육청(서울, 부산, 광주, 경남, 제주)의 경우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등으로 지원

-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직무관련 사건 지원 요건 및 신청서류와 지원 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소송비용 지급에 있어 필요한 지원 요건 및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요건 및 회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안 제6조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의 소송 진행사항과 관련한 보고 의무 및 회수 결정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 소송비용을 사전에 지원 받은 공무원의 경우 매 3개월마다 진행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나, 보고의 부담으로 판결 확정 후 사후 정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바 해당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보고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부칙에서**,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함
 - 현재 직무관련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1건¹⁾으로, 조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향후 소송지원 사후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송 건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1) OO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 건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 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사후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소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고, 타 시·도 또한 행정 규칙 및 소송 관련 지원 조례 외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등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써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